■ 하천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1. 12. 28.>

고시 제 호

하천구역 결정(또는 변경·폐지) 고시

「하천법」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(또는 변경·폐지)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○○○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직인

하천명칭	하천등급	하천구간			면적(㎡)	결정(변경·폐지)일, 사유
		기점	종점	거리(㎞)		

첨부서류	1.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.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(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.)

210㎜×297㎜[백상지(120g/㎡) 또는 백상지(80g/㎡)]